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55호 2011. 10. 10.(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75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1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3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3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38호(도로명주소 고시) 15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17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2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감경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2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2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26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제4조) ○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서식을 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제5조~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제9조~제10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0.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75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라 함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6.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의 상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 안전, 자문안전 또는 보고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전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출석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진행 등)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의 성명
- 3. 심의사항
- 4. 토의진행사항
- 5. 위원의 발언내용
- 6. 심의결과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 택)
사무실)

소속 및 직위 :

전공분야 및 취득학위 :

연 락 처 : 자 택)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F A X)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20

성명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축 장

□□□□□□

○ ○ ○

귀하를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자문·보고) 안건	
의 안 번 호	제 호
심 의 일 자	0000. 00. 00.

심 의 (자 문 · 보 고) 안 건 명

제 출 자	연수구청장
제출년월일	0000. 00. 00.

심 의 (자 문 · 보 고) 안 건 명

1. 제안이유

○ 내용 서술

2. 주요내용

○ 내용 서술

3. 추진경위

○ 0000. 00. 00 :

○ 0000. 00. 00 :

4. 심의자료

○ 관련법령, 도면 등 첨부 또는 설명

5. 참고사항, 민원사항 등

○ 내용 서술

6. 의견청취

○ 열람 및 공고

- 열람·공고 기간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 주민의견

- 관계기관(부서) 의견
- 제시의견 및 검토내용(반영여부 포함) : 가능한 표로 작성

7. 의결주문(의결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00)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안건 심의에 필요한 도면(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 각종 도면), 현장사진, 편입토지조서 등 보조자료 빠짐 없이 수록 요(아래한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0. 00. 00 (일)

연번	성명	확인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지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위원으로 재임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 원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33-5외 11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2011. 10. 10.고시 후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NO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3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20-23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79-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20-11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7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43-18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62번길 5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01-11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64번길 15-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47-30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24번길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1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24번길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2, 420-3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4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45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4-3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2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39-1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2-3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86번길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33-1	2011.10.10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10.

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23번길 26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10.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 주소 고시 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51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23번길 26	2009-07-09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87번길 16	2009-05-14	하모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에이스테크놀로지 R&D 센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도로법 전부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으로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개정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26일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 FAX:810-7419, ☎810-7397/참조 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연수구 홈페이지 (<http://yeonsu/go/kr> -- ‘구정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 1995. 4. 1 조례 제72호

(일부개정) 2009.03.02 조례 제 60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3.2>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1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 등공포에

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 및 검토서

관련부서			
조례명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
실·과별 의견			
협약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기간 : ○방법 :			
입법 예고결과			
예고기간	의견제출처	제출의견	조치내용
○기간 : ○방법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감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예규명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지침
일부개정예규안

2. 개정취지

○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10년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감경대상 금액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상인 보호와 과징금 체납 감소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세외수입 증대를 이루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과징금 경감 대상 범위 확대

-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 위반자로서 당해 위반으로 인한 매출총액이 5,000원 이하인 자에서 20,000원 이하인 자로 변경 (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예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10.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참조 :문화체육과장, 전화:032-810-7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지침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 위반
자로서 당해 위반으로 인한 매출총액이 20,000원 이하인 자(안 제3조)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정기준) ①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1.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모자·부자가정 2. 적발일 현재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3. 1급 ~ 3급 장애인 4.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5. 적발일 기준 3년 이내에 청소년보호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규정 위반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산업체 취업 또는 수습기간 중 회식 등 회사의 공식 행사 참여시 적발된 때(단 해당 사업체장의 확인이 가능할 때)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 위반자로서 당해 위반으로 인한 매출총액이 5,000원 이하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처분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거나 확인하는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감정기준)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 위반자로서 당해 위반으로 인한 매출총액이 20,000원 이하인 자</u> ② (현행과 같음)

검 토 의 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약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의 지킴이 활동을 권장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특정인들에 의해 신고포상금자체를 위한 전문적인 신고활동과 포상금 과다 지급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 최초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 자격제한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연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안 제6조)
-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안 제6조)
- 포상금 지급액 제한
 - 신고자 1인당 당해연도 수령횟수 3회로 제한(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10.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참조 :문화체육과장, 전화:032-810-7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연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 할 경우
5. 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연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u> 4. <u>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 할 경우</u> 5. <u>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u>

검 토 의 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약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